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광주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이장우
전화 062-231-4332/팩스 062-231-4951

보도자료
2025. 2. 24.(월)

국립○○과학관 임직원 등 금품비리 사건 수사결과 - 국립○○과학관 경영지원본부장 등 총 12명 기소(5명 구속 기소)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**광주지검 반부패·강력수사부(부장검사 조정호)**는 국립○○과학관 임직원 등에 대한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,
 - <국립○○과학관 경영지원본부장 등 임직원 4명> ① **국립○○과학관 발주 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4,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하고,** ② 국립○○과학관에 설치되어 있는 **CCTV 영상을 무단 유출한 국립○○과학관 임직원 4명**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(뇌물), 뇌물수수,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각 **구속 기소**하고,
 - ※ 공공기관인 국립○○과학관 임직원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됨
 - <관급 계약 알선업자(중개·알선업체, 속칭 브로커) 4명> ① **국립○○과학관 발주 계약 체결 알선 대가로 계약업체로부터 합계 약 4억 6,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고,** ② 그 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국립○○과학관 임직원들에게 **합계 약 1억 1,600만 원 상당의 현금**을 교부한 브로커 4명을 변호사법위반, 뇌물공여로 그중 **1명**을 구속 기소, **3명**을 불구속 기소하고,
 - <관급 납품업자(계약업체) 4명> **국립○○과학관 발주 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국립○○과학관 임직원들에게 합계 약 2,5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한 관급 납품업자 4명**을 뇌물공여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
 - ※ 국립○○과학관 임직원들 및 브로커들의 **범죄수익 약 4억 5,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 완료**하였음
- 검찰은 앞으로도 **공공 부문의 구조적 부정부패, 지역 토착비리** 척결에 최선을 다하고,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등 **엄정 대처**하여 범죄 유인을 적극 차단하겠음

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지위 (범행당시)	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	처분
<국립○○과학관 임직원>				
1	A○○	국립○○과학관 경영지원본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0. 3. ~ '23. 12. B○○, C○○, D○○와 공모하여 국립○○과학관(이하 '과학관') 발주 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4,000만 원을 수수 [특가법 위반(뇌물), 뇌물수수] ○ '18. 8. ~ '23. 1. B○○, C○○와 공모하여 과학관 CCTV에 촬영된 개인정보인 직원들 대화 장면 등 영상을 직원 감시 목적으로 직원 동의 없이 제공 받음 [개인정보보호법위반] 	구속 구공판
2	B○○	국립○○과학관 운영지원실장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1. 1. ~ '23. 12. A○○와 공모하여 과학관 발주 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합계 약 5,300만 원을 수수 [특가법위반(뇌물), 뇌물수수] ○ '18. 8. ~ '23. 1. A○○, C○○와 공모하여 과학관 CCTV에 촬영된 개인정보인 직원들 대화 장면 등 영상을 직원 감시 목적으로 직원 동의 없이 제공 받음 [개인정보보호법위반] 	구속 구공판
3	C○○	국립○○과학관 운영지원실장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1. 5. ~ '23. 11. A○○와 공모하여 과학관 발주 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합계 약 3,900만 원을 수수 [특가법위반(뇌물), 뇌물수수] ○ '18. 8. ~ '23. 1. A○○, B○○와 공모하여 과학관 CCTV에 촬영된 개인정보인 직원들 대화 장면 등 영상을 직원 감시 목적으로 직원 동의 없이 제공 받음 [개인정보보호법위반] 	구속 구공판
4	D○○	국립○○과학관 시설안전관리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0. 3. ~ '22. 11. A○○와 공모하여 과학관 발주 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합계 약 4,900만 원을 수수 [특가법위반(뇌물), 뇌물수수] 	구속 구공판
<관급 계약 알선업자(속칭 브로커)>				
5	E○○	M 업체 운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9. 8. ~ '24. 1. 과학관 발주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합계 약 3억 1,800만 원을 수수 [변호사법위반] ○ '21. 1. ~ '23. 11. 과학관 임직원들에게, 과학관 발주 계약 상대방으로 자신이 알선한 업체를 선정해준 대가 명목으로 합계 약 7,150만 원을 교부 [뇌물공여] 	구속 구공판
6	F○○	N 업체 운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0. 4. ~ '22. 11. 과학관 발주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합계 약 1억 1,500만 원을 수수 [변호사법위반] ○ '20. 3. 과학관 임직원들에게, 과학관 발주계약 상대방으로 자신이 알선한 업체를 선정해준 대가 명목으로 합계 약 3,700만 원을 교부 [뇌물공여] 	불구속 구공판

7	G○○	O 업체 운영자	○ '20. 4. ~ '23. 1. 과학관 발주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합계 약 2,070만 원을 수수 [변호사법위반] ○ '22. 2. ~ '23. 1. 과학관 임직원들에게, 과학관 발주 계약 상대방으로 자신이 알선한 업체를 선정해준 대가 명목으로 합계 약 570만 원을 교부 [뇌물공여]	불구속 구공판
8	H○○	P 업체 운영자	○ '22. 3. 과학관 발주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합계 약 720만 원을 수수 [변호사법위반] ○ '22. 3. 과학관 임직원들에게, 과학관 발주계약 상대방으로 자신이 알선한 업체를 선정해준 대가 명목으로 합계 약 250만 원을 교부 [뇌물공여]	불구속 구공판
<관급 납품업자(계약업체 운영자)>				
9	I○○	Q 업체 운영자	○ '22. 8. ~ '23. 12. 과학관 임직원들이 자신이 운영 하는 업체를 과학관 발주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준 대가 명목으로 합계 약 845만 원을 교부 [뇌물공여]	불구속 구공판
10	J○○	R 업체 운영자	○ '22. 4. ~ '23. 3. 과학관 임직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과학관 발주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준 대가 명목으로 합계 약 730만 원을 교부 [뇌물공여]	불구속 구공판
11	K○○	S 업체 운영자	○ '21. 6. 과학관 임직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과학관 발주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준 대가 명목 으로 합계 약 800만 원을 교부 [뇌물공여]	불구속 구공판
12	L○○	T 업체 운영자	○ '22. 11. 과학관 임직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과학관 발주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준 대가 명목 으로 합계 약 185만 원을 교부 [뇌물공여]	구약식

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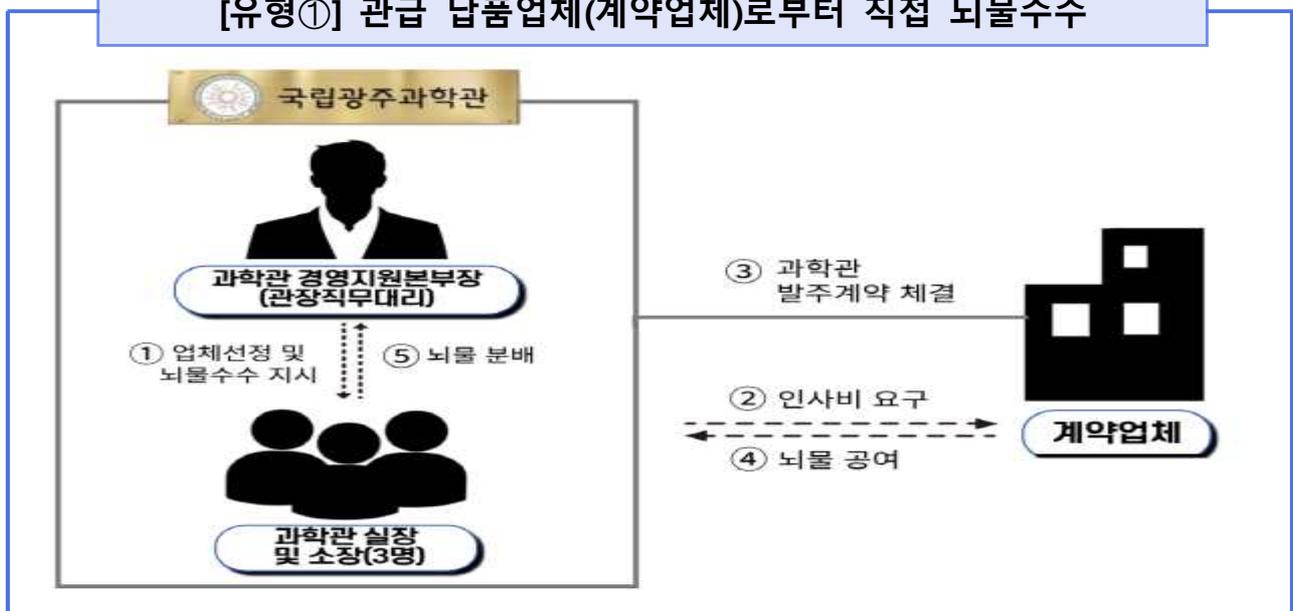
주요 수사 경과

- '24. 3. 18. 과기부, 국립○○과학관 임직원들 고발
- '24. 4. ~ '25. 1. 통신분석, 계좌추적(대상자 31명), 압수수색(장소 9곳),
조사(32명, 46회), 세무자료 분석(업체 15개)
- '25. 2. 6. 국립○○과학관 임직원 4명 구속
- '25. 2. 13. 브로커 1명 구속
- '25. 2. 19. 범죄수익 약 4억 5,000만 원 추징보전 청구 인용
- '25. 2. 24. 12명 기소(구속 구공판 5명, 불구속 구공판 6명, 구약식 1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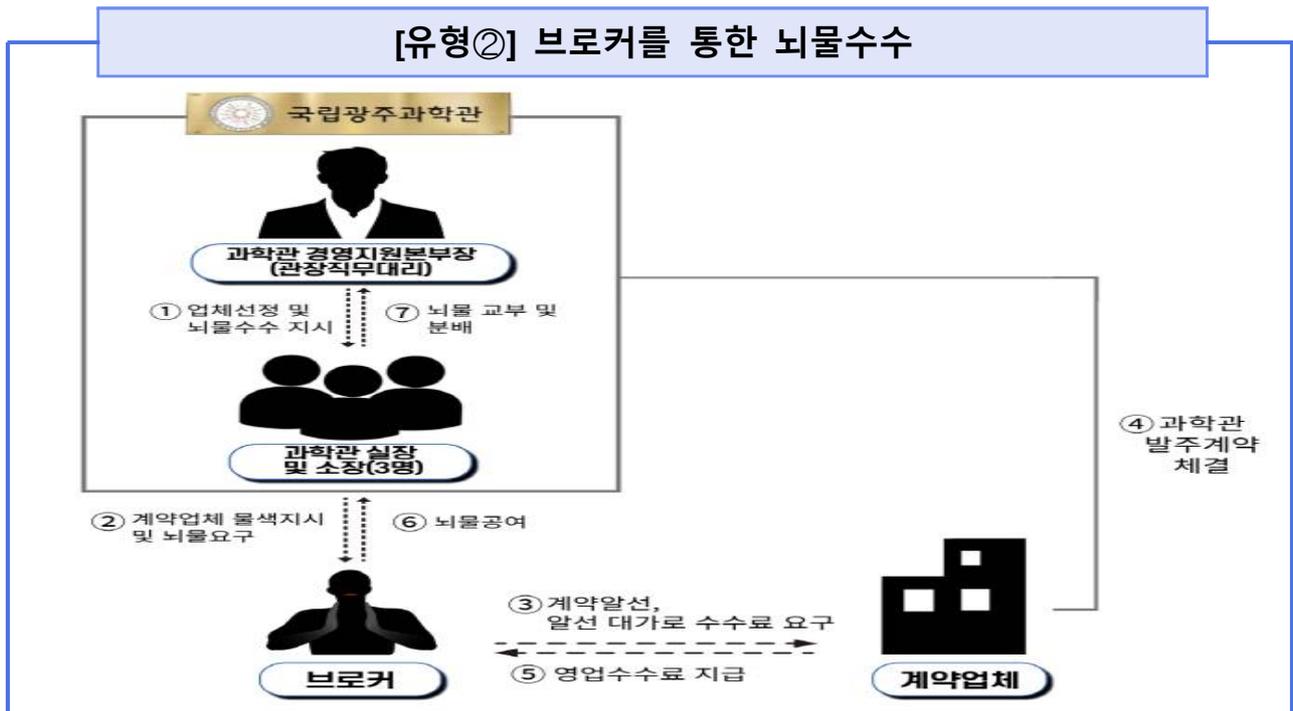
1 지위를 이용한 장기간의 조직적 금품수수 범행 전모 규명

- 검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, 다각도의 수사를 통하여 공공기관인 국립○○과학관 임직원들인 피고인 A○○, B○○, C○○, D○○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, 조직적으로 공공기관 발주 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, 이들 4명을 모두 구속 기소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범행을 엄단하였음
- 이들은 ‘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’ 등 용역 계약 및 ‘스마트 교육·전시환경 구축 물품 조달구매’ 등 물품 납품 계약을 포함한 국립○○과학관에서 발주하는 총 70건의 계약과 관련하여, 계약 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대가 명목으로 ‘인사비’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고, 범행 수법은 두 가지 유형으로 파악되었음
- [유형①] 국립○○과학관 발주 계약과 관련하여, 계약체결을 원하는 관급 납품업체(계약업체) 운영자에게 직접 ‘인사비’를 요구하여 이를 수수

[유형①] 관급 납품업체(계약업체)로부터 직접 뇌물수수



- [유형②] 브로커로 하여금 관급 납품업체를 물색하도록 하고, 브로커가 특정 업체를 알선하는 경우 그 업체와 국립○○과학관 발주 계약을 체결한 후, 브로커가 해당 업체로부터 알선료를 받으면, 브로커에게 그중 일부를 '인사비'로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



- 한편, 이들은 ▲계약업체나 브로커를 물색하는 역할, ▲인사비를 조율하는 역할, ▲인사비를 주는 업체를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역할, ▲인사비를 수령하는 역할, ▲인사비를 전달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면서, 철저히 분업화된 형태로 조직적인 뇌물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

2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비리 범행 적발

-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급 브로커 개입 사실을 적발하여 인지하고,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,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공공기관 발주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'인맥'이나 '뒷돈'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지역 토착 비리 범행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엄단하였음

3 범죄수익 철저 박탈

- 이 사건 범행으로 국립○○과학관 임직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(약 1억 4,000만 원) 및 주된 브로커 1명이 취득한 범죄수익(약 3억 1,800만 원)에 대해 전액 추징보전을 완료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,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함

IV 향후 계획

-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
- 앞으로도, 본건과 같은 지역 토착비리 범행, 공공 부문의 구조적 부패범죄를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가겠음 